

검 토 보 고 서

1. 안 건 명

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

2. 제출경위

- 가.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- 나. 제출일자 : 2019년 5월 1일(수)
- 다. 회부일자 : 2019년 5월 3일(금)

3. 제출이유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가 제정됨에 따라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제출함.

4. 주요내용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가 제정됨에 따라 폐지된 종전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을 승계하여 운용하고자 함.
 - 종전 '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' 3,452,249천원을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으로 전입 처리(2019. 7. 1.)
 - 종전의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·운용 조례」에 따라 융자된 융자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회수하되, 회수된 융자금은 추후 수입 조치

5. 관계법령

- 가.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- 나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설치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5조(기금의 조성)
- 다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설치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부칙 제2조(다른 조례의 폐지) 및 제3조(경과조치 등)

6. 종합 검토의견

○ 본 계획안은

‘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’ 의결로 주거위기가구의 주거안정과 주거 취약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을 지원하기 위한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가 제정되고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·운용 조례」가 폐지됨에 따라 기금 조성액 전입 처리와 전출 처리 등 후속 처리를 위하여 기금운용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.

○ 검토의견으로는

- ‘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’을 ‘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’에 이입 처리하는 것은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에 근거하여 이행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- ‘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’의 수입계획은 종전의 ‘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’의 예치금 34억 5,224만 9천원을 ‘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’에 전입 처리하고, 융자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회수 하되, 회수된 융자금은 추후 ‘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’으로 세입 조치하며,

- 지출계획은 임시거소 및 주택매입과 주택임차보증금 등으로 29억 3,250만원, 주거안정자금융자 및 지원에 1억 1,000만원, 예치금으로 4억 9,531만원, 기타운영비로 268만원을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.
- 다만, 기존에 운영되었던 ‘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전기금’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융자사업으로 금융기관 여신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사업실적이 저조하고 실효성이 없어 폐지된 것을 감안하여 ‘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’ 운영 시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 융자성 사업비에 대한 여신 규정 완화 등 실효성 있는 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,
-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의하면 일반회계, 기타특별회계 예산으로는 기금사업을 지원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, 기금의 적립기간동안 당해 사업의 추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하다는 규정에 따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에 걸쳐 매년 일반회계에서 출연하여 재원을 조성하는 것은 문제없으나
- 이후에도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일반회계의 출연금이 아닌 기금 자체 재원이 확보되어야 하는 바, 건전한 기금 운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
〈표1〉 연도별 주택매입 사업목표

연 도	2019	2020	2021	2022	계
자체매입수	10	5	5	5	25

〈표2〉 연도별 기금 재원조달 방안

(단위: 억원)

연 도	2019	2020	2021	2022	합계
재원(세입)	34	19	20	21	94
재원내역	폐지기금 이입	일반회계 출연금	일반회계 출연금	일반회계 출연금	

참 고 자 료

1.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

수입계획

(단위: 천원)

관	항	목	'19년도 수입액	산 출 내 역
		합 계	3,540,499	
		경상적세외수입	88,250	
		재산임대수입	60,500	
		공유재산임대료	60,500	1)매입주택임대료 2)보증금 5,000,000원*11개소 = 55,000,000 2)월임대료 100,000원*11개소*5개월 = 5,500,000
		사용료수입	27,500	
		기타 사용료	27,500	1)임차주택임대료 2)보증금 5,000,000원*5개소 = 25,000,000 2)월임대료 100,000원*5개소*5개월 = 2,500,000
		이자수입	250	
		통화금융기관융자금회수 이자수입	250	1)융자금회수 이자수입 100,000,000원*0.01*1/12*3개월 = 250,000
		내부거래	3,452,249	
		전입금	3,452,249	
		기금전입금	3,452,249	1)기금 전입금 3,452,249,000원

□ 지출계획

(단위: 천원)

세부사업	사업내용별 산출기초	지출액
합 계		3,540,499
여유자금예치		495,319
1)예치금	495,319,000원 = 495,319	495,319
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운용		2,680
1)기금운용심의위원회참석수당	70,000원*4명*6회 = 1,680	1,680
1)홍보물제작등	1,000,000원 = 1,000	1,000
임시거소 및 매입임대주택 운영		2,932,500
1)주택(유상임차)임차보증금	5,000,000원*5개소 = 25,000	25,000
1)주택(유상임차)월임차료	100,000원*5가구*6개월=3,000	3,000
1)기타경비(중개수수료, 등기비용등)	1,500,000원*11개소 = 16,500	16,500
1)주택공공요금(관리비, 전기료, 가스료등)	25,000원*20개소*6개월 = 3,000	3,000
1)주택개보수	5,000,000원*18개소 = 90,000	90,000
1)주택매입	250,000,000원*11개소 = 2,750,000	2,750,000
1)물품구매(가전제품, 가구등)	2,500,000원*18개소 = 45,000	45,000
주거안정자금 융자 및 지원		110,000
1)주거안정자금지원	1,000,000원*10가구 = 10,000	10,000
1)주거안정자금(입주보증금)융자	10,000,000원*10가구 = 100,000	100,000

2. 관계법령

1.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. <개정 2015. 7. 24.>

1.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
2.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
3.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5. 7. 24.>

1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
2. 「재해구호법」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

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1. 5. 30.]

2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설치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5조(기금의 조성)와 동 조례 부칙 제2조(다른 조례의 폐지)

제5조(기금의 조성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종전의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·운용 조례」에 따라 적립된 기금
2. 제1호에 따른 기금의 융자회수금 및 이자수입
3. 서울특별시 마포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 일반회계 출연금
4. 마포하우징사업에 따른 융자회수금 및 이자수입
5. 마포하우징사업에 따른 매입임대주택 입주계약에 따른 임대료
6. 저소득 주거취약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그 밖의 자금

부 칙 < 조례 제1207호, 2019. 3. 21.>

제2조(다른 조례의 폐지)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·운용 조례」는 폐지한다.

3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설치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5조(기금의 조성)

제5조(기금의 조성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종전의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·운용 조례」에 따라 적립된 기금
2. 제1호에 따른 기금의 용자회수금 및 이자수입
3. 서울특별시 마포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 일반회계 출연금
4. 마포하우징사업에 따른 용자회수금 및 이자수입
5. 마포하우징사업에 따른 매입임대주택 입주계약에 따른 임대료
6. 저소득 주거취약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그 밖의 자금

4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설치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부칙 제2조(다른 조례의 폐지) 및 제3조(경과조치 등)

부 칙 < 조례 제1207호, 2019. 3. 21.>

제2조(다른 조례의 폐지)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·운용 조례」는 폐지한다.

제3조(경과조치 등) ① 종전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기금으로 이입조치한다.

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·운용 조례」에 따라 융자된 융자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회수하되, 회수된 융자금은 이 조례에 따른 기금으로 이입조치한다.